

1960년대 보존원칙의 수립과 변화의 연구

- 남대문수리공사와 석굴암수리공사에서 원상, 원형, 복원 용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Change of Conservation Principles in the 1960s
- Focus on the Terms of Historic State, Historic Form, and Restoration at Namdaemun and Seokguram Repair

이 정 아 *
Lee, Joung-Ah
(한양대학교 ERICA 연구교수)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Namdaemun repair and the Seokguram restoration, which had begun in 1961, as an important repair conducted during the time of seeking the conservation principle of architectural heritage after liberation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inciples described in the repair report issued after the two repairs, meeting records, and related expert announcements, it is shown that the principle of 'preservation of the historic state' had been established at Namdaemun repair and later have changed to the principle of 'restoration of the historic form' which means reconstruction in Seokguram restoration.

By analyzing the minutes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s meeting on the repair of other cultural properties during this period, it is revealed that the key terms related to the preservation principle, 'historic form' and 'restoration', were given meaning as 'object' and 'method' of preservation, and then 'restoration of the historic form' has been gradually used as a conservation principle.

주제어 : 승례문, 석굴암, 보존, 원칙, 원상, 원형, 복원

Keywords : Sungnyemun, Seokguram, preservation, principle, historic state, historic form, restoration

1. 서론

한국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근대적 의미의 보존과 수리는 이미 백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 역사의 각 시기에 적용된 보존과 수리의 원칙은 단순히 지정 문화재의 보존행정을 위한 원칙을 넘어 보존에 대한 이론적 모색의 표상화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건축유산을 포함한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은 1999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시 명시된 '원형유지'이다. 여기서 '원형'은 보존의 대상이 되는 핵심 개념으로서 원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유

지'라는 조치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원형'에 대한 현재적 이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원형'을 중심으로 한 보존원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고 그 과정 중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건축유산의 보존은 구한말의 자각과 일제강점기의 제도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해방 후 실천적 모색을 거쳐 이루어졌다. 특히 해방 후 모색의 시기는 우리나라 건축유산 보존의 원칙과 방법을 지금의 모습으로 이끈 중요한 선택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 모색은 일제강점기의 제도적 경험과 일본의 수리 경향에 대한 단순한 연속이나 모방이 아닌 논의의 과정이었다. 당시의 논의는 표면적으로 보면 제도의 수립에서부터 구체적 보존 방법에 이르지만, 논의의 핵심은 보존을 통해

* Corresponding Author : pyorong@hanyang.ac.kr

이 논문은 2022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0616)

8 논문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포함한 ‘보존원칙’이었다. 그리고 그 논의의 한가운데에는 해방 후 관련 제도 수립을 준비하던 1961년 시작된 ‘남대문수리공사’와 ‘석굴암수리공사’가¹⁾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해방후 건축유산의 보존원칙이 탐색되던 과정 중 원칙의 모색과 적용의 실험 현장으로서 ‘남대문수리공사’와 ‘석굴암수리공사’를 주목하고, 건축유산 보존사적 관점에서 ‘원형’과 같은 중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건축유산 보존원칙의 적용과 변화의 과정을 연구한다.

2. 연구 범위 및 기존 연구

건축유산의 보존과 관련된 원칙이라고 하면 원위치에 보존, 최소한의 개입, 원부재의 최대 사용, 교체부재의 표식 등이²⁾ 언급되는데 이는 보존 조치의 구체적 방법을 가리키는 ‘수리원칙’이다. 건축유산의 근대적 보존의 역사에서 이러한 수리원칙은 수리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용의 정도나 해석에 차이는 있으나 의미 자체는 큰 이견 없이 공감되어 왔다.³⁾

이러한 수리원칙을 넘어 일찍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건축유산 보존원칙의 모색 과정에서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창건 시의 유구(遺構)를 보존하는 것 외에 개보수와 시간에 의한 퇴락을 포함하여 생긴 역대 흔적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창건기에 추구된 하나의 양식으로 복원하느냐 아니면 역대를 거치며 누적된 흔적도 남겨두느냐

나 하는 것이었다.⁴⁾ 그것은 각각 ‘양식적 복원’과 ‘현상적 보존’으로 그 핵심을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보존행위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앞서 서술한 구체적인 ‘수리원칙’들에 상위하는 ‘보존원칙’으로 부를 수 있다.

물론 오늘날 보존원칙은 역사적 층위의 존중을 토대로 하되⁵⁾ ‘다만, 부가된 문화재 수리의 흔적보다 그 이전이 역사적·고고학적·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이전 시대의 상태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⁶⁾ 양식적 복원과 현상적 보존 중 하나에 간단히 치우치지 않을 뿐 아니라, 유산 진정성 및 지속가능성의 중시, 증대되는 사회적·문화적 가치의 인지 및 사회 속에서 유산 변화상의 인정 등 유산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포괄적인 보존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보존원칙의 이러한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존원칙의 적용과 이해의 역사적 과정을 명확히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럽에서 이상적 복원과 반복원 논쟁으로 불리기도 하는 양식적 복원과 현상적 보존 두 보존원칙에 대한 저울질은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수리를 전개하였던 해방 후 한국에서도 관찰된다. 유럽과 다른 한국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양식적 복원과 현상적 보존이라는 두 원칙이 어떻게 해석 및 적용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현재 원칙인 ‘원형유지’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수립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한국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원칙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를 보면, 1980년대 세계유산협약의 가입에 즈음하여 유럽보존이론의 소개와 해석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고⁷⁾ 2000년대 들어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국외 저작들이 번역되어 소개되고 가치, 진정성 등 보존 개념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⁸⁾ 보존

1) 남대문의 명칭에 대해 ‘남대문수리공사’와 같이 1950~1960년대 생산된 문건 및 당시 수리를 가리킬 때는 문건에 사용된 ‘남대문’ 명칭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승례문’을 사용하였다. 1961년 남대문수리공사의 명칭은 보고서 본문 및 계획서 등에 ‘남대문중수공사’로 다수 적혀 있는 등 혼용되었지만 이 글에서는 최종 보고서인 『서울남대문수리보고서』(1966)의 표지 명칭에 따라 ‘남대문수리공사’로 부른다. 1961년 석굴암공사의 명칭 역시 공사계획서, 시방서, 지침서, 보고서 등에서 ‘석굴암보수공사’로도 표기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최종 보고서인 『석굴암수리공사보고서』(1967)의 표지명칭에 따라 ‘석굴암수리공사’를 사용하였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예규. 2022.1.1. 폐지제정) 제3조에서 문화재 수리를 할 때 원위치 보존, 최소한의 개입, 가역성, 원부재의 최대 사용, 교체부재의 표식 등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1950~60년대 한국의 건축유산 수리 현장에서도 이러한 수리원칙이 실제 적용되었거나 입찰 시 적용하도록 명시한 것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위사극락전 수리공사 보고서』(국립박물관, 1958년, 44~45쪽)에서 ‘종래의 용계를 될 수 있는 대로 다시 사용하고, ‘수리 연호를 낙인하여’ 등이 서술되어 있다. ‘남대문수리공사’에서도 교체되는 기와와 전석 부재에는 소성할 때 보수년월을 표식하고(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서울남대문수리보고서』, 1966, 29쪽) 보충되는 새 목부재에는 화인(火印)을 찍어서 날짜를 남기도록 하였다.(김정기, 『남대문통신』, 『고고미술』, 1962.12)

4) 대표적 인물로 비올레 르뒤크(Viollet-le-Duc)와 존 러스킨(John Ruskin)이 있다

5)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중 ‘모든 시대의 흔적은 정당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중 ‘문화재 축조에 정당하게 기여한 모든 시대요소가 존중되고’,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중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등이 있다.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제15조.

7) 이태녕, 「문화재의 보존철학의 발전과 보수의 논리규범」, 『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1981, vol. 14, pp.1~7. 김봉건, 「문화재 보수이론」, 『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1992, vol. 25, pp.73~93 등이 있다.

8) 이수정, 「문화유산 보존원칙 수립을 위한 가치의 정의 및 방법론」, 『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vol.44, pp.154~171. 이수정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진정성 개념의 속성과 변화 고찰」, 『문화재』, 국립

이론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문화유산의 보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 보존원칙의 재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⁹⁾ 그중에서 특히 한국 보존원칙에서 핵심 개념인 ‘원형’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¹⁰⁾ ‘원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원형’이 ‘당초 모습’으로 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한다. 그리고 그런 인식의 원인은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지정과 수리 중 보편적이었던 ‘고식(古式) 존중’의 경향,¹¹⁾ 해방 후 고찰 부족의 배경하에 일제강점기라는 ‘전대의 역사적 경험’의 결과로¹²⁾ 서술되기도 한다.

원형에 대한 해방 후의 인식은 물론 그 이전의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하지만, 해방 후 기념비적인 건축 문화재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전체해체라는 대공사를 시행한 1961년의 ‘남대문수리공사’와 ‘석굴암수리공사’ 현장에서 원형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조치 적용의 비판적 판단 과정이 비교적 명확히 관찰된다. 이 글은 그 지점을 대상으로 하여 해방 후 ‘원형’의 의미형성 과정을 탐색하여 당시 ‘원형’에 부여된 의미의 시대적 의의를 파악하고 나아가 ‘원형’의 의미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글에서 사용하는 ‘원형(原形)’, 그리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원상(原狀)’ 및 ‘복원(復原)’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원형은 ‘본디의 꼴’을, 원상은 ‘본디의 형편이나 상태’를, 복원은 ‘원래대로 회복함’을 가리킨다.¹³⁾ 사전적 의미 및 보존이론사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이 글에서 필자가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원형은 초기(창건 혹은 이른 시기)의 유구, 모습 및 양식으로, 원상은 창건 및 역대를 거쳐 남아있는 유구, 모습 및 상태로, 복원은 초기 모습으로

변경하는 조치라고 전제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인용하는 1960년대 생산된 문건에서 사용된 ‘원형’, ‘원상’, ‘복원’ 등 용어는 위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의미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자들의 깊은 주의를 바라며, 이 연구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의미의 혼용과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음을 밝힌다.

두 수리공사를 보면, 먼저 숭례문은 일제강점기에 양쪽 성벽이 철거되어 도성 남문의 기능은 잃었지만, 기념적으로 남겨진 육축과 목조 문루는 일제강점기 동안 큰 수리 없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 총포와 유탄에 의해 목부와 석부가 피해를 입었고 그에 따라 1953년에 지붕과 석축 상부에 대한 긴급보수공사 성격의 ‘남대문 재난복구공사’가 이루어졌으나 오랜 퇴락의 누적과 전쟁 시 입은 석축 기초부 피해의 문제가 남아있었다.¹⁴⁾ 이에 근본적인 보수를 위해 1961년 7월 20일부터 1963년 5월 14일까지 약 1년 10개월에 걸쳐 ‘남대문수리공사’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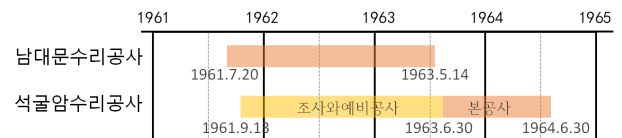


그림 1. ‘남대문수리공사’와 ‘석굴암수리공사’의 기간 비교

한편, 석굴암은 1913년 일제에 의해 전체해체되어 석부재의 바깥쪽에 폭 3척으로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재조립되었는데 2년이 지나지 않아 빗물이 침투하여 석조각이 심각하게 오염되자 1917년과 1920년 두 차례의 방수공사가 이루어졌으나 해결되지 못하였고 일제강점 후기에는 거의 방치되었다.¹⁵⁾ 해방 후 1947년 처음으로 석굴암에 대한 현황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수차례의 조사를 거쳐 1961년에 수리를 위한 설계서가 마련되었다. 그에 따라 발굴을 포함한 ‘조사와 예비공사’가 1961년 9월 13일에 시작되어 1963년 6월 30일까지 1년 9개월에 걸쳐 먼저 진행되고, 이어서 시작된 ‘본공사’는 196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진행되어 총 2년 9개월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석굴암수리공사’가 이루어졌다.

이 두 수리공사는 국가적인 관심 속에서 진행되면서 수리 당시와 준공 후에 관련자들이 현장 소식을 전하거나 수리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¹⁶⁾ 그 이후

문화재연구소, 2012, vol.45, pp.126~139 등이 있다.

9) 강현, 「한국의 건축문화재 보존원칙 재고 - 목조건축 수리공사 관련 국제적 원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17, pp.249~254. 이수정, 「문화재 보존철학과 보존윤리의 필요성과 과제」, 『보존과학회지』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8, vol.34, pp.227~233 등이 있다.

10) 정승진, 「동아시아의 건축보전에서 “원형의 진정성” 개념에 재고의 필요성」, 『아시아연구』, 한국아시아학회, 2004-06 7(1), pp.245~266. 이수정, 「한국의 문화재 보존 관리에 있어 원형개념의 유입과 원형유지원칙의 성립 및 발달과정」, 『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vol. 49, pp.100~119. 강현, 「건축문화재의 원형(原形) 개념과 보존의 관계-한국 목조건축문화재 수리 역사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vol. 49, pp.120~145 등이 있다.

11) 강현, 2017, 전계서, p.252

12) 이수정, 2016, 전계서, p.106

1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3년 2월 18일 검색)

1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서울남대문수리보고서』, 1966, 34쪽

15) 문화재관리국, 『석굴암수리공사보고서』, 1967, 16~24쪽

16) 윤무병, 「남대문 해체부재에 대한 조사 보고 개요」, 『미술자료』,

에도 승례문의 경우 2008년 화재 이후 복구를 계기로 연혁과 수리과정 및 방법에 대한 보고서와 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석굴암의 경우 최근 설계원리에 대한 연구¹⁷⁾ 등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승례문과 석굴암의 1961년 수리를 소재로 하여 기술적 수리 내용이 아닌 ‘보존원칙’의 수립과 변화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먼저 두 수리 후 발행된 수리보고서와 관련 회의기록 및 관련자의 발표문 등에 서술된 원칙을 통해 두 수리에서 주도적인 보존원칙을 살핀다. 그리고 서술된 보존원칙의 용어가 당시에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1950~1960년대 두 수리를 전후한 시기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에서 다른 수리를 대상으로 보존원칙을 언급한 부분에서 해당 용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1960년대 기념비적인 두 수리를 거치면서 한국에서 보존원칙이 수립되고 또 변화되는 과정을 살핀다.

3. 남대문과 석굴암 공사의 원칙

3-1. ‘남대문수리공사’의 보존원칙: 원상복구

1953년 승례문의 긴급보수공사가 진행되었지만, 오랜 퇴락과 전쟁으로 인한 파손에 대해 다시 중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던 1959년에는 승례문을 전체 해체할 계획이 없었다.¹⁸⁾ 하지만 6개월에 걸친 사전 현황조사를 거치면서 파손과 퇴락의 심각성이 보고되어¹⁹⁾ 전면적인 수리로 확대되게 된다.

학술적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충분한 경험의 축적 없이 범위가 확대된 ‘남대문수리공사’는 해방 후 최초

국립박물관, 1961, vol.4, pp.31~34; 신영훈, 「남대문통신(2)」, 『미술자료』, 국립박물관, 1962; 최용완, 「서울 남대문공사를 참관하고」, 『건축』, 대한건축학회, 1963, vol.7; 최용완, 「남대문 해체후 발견된 문서」, 『미술자료』, 국립박물관, 1963, vol.4; 안병욱, 「남대문 중수공사를 마치고」, 『신세계』, 1963 (7); 신영훈, 「서울 남대문 지붕의 변천」, 『고고미술』, 1965, vol.6 등이 있다.

17) 최근 발표된 것으로 Park Jin-Ho, *The Seokguram Grotto in Korea and the Gougur Rule: Rebuttal of the $\sqrt{2}$ and $\sqrt{3}$ Hypothesis and a New Interpretation of the Underlying Method*, Nexus Network Journal, 2022 이 있다.

18) 1959년 5월 15일 회의: “2. 남대문 보수 방침에 대하여 완전해체 보수는 예산상 불가하다니 일부 긴급보수를 실시하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토록 함”. 『문화재위원회회의록 (1952년12월19일부터 1959년 10월21일까지)』,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992:72

19) “실측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위험 직전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기까지는 무려 6개월이라는 장시간을 두고 제도 및 고적기술자를 합하여 근 200여 명이 300여 매의 도면에 나타냄으로써 완성되었다.” 안병욱 「남대문 중수공사를 마치고」(『신세계』, 신세계사. 1963. vol.7: 154

로 시행된 대규모 목조건축의 보존수리였기 때문에²⁰⁾ 기술인력의 확보에서부터 공사 원칙의 수립과 수리 방법의 제시까지 모든 것이 한국 건축계와 역사계가 당장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로 다가왔다. 이에 거국적 측면에서 “전문적 기술진을 총동원”하였지만²¹⁾ 건축유산의 근대적 수리에 학술과 실무 지식을 동시에 갖춘 권위 있는 전문가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수리의 단편적 경험을 바탕으로 수리방식과 인적구성 등 모든 것을 첫 단계부터 한 걸음씩 더듬으며 시행되었고 문제가 발생하면 중간에 수정되었다.

이렇게 진행된 남대문수리공사에서 보존원칙 역시 모색 중인 경향이 발견된다. 남대문수리공사에서 보존원칙과 관련된 서술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²²⁾ 먼저 1961년 7월 착공 직전에 마련된 「남대문중수공사계획(이후 ‘공사계획’)」에서는 “원상대로 복구”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준공된 후 작성된 「서울남대문중수공사를 참관하고」와 『서울남대문수리보고서』에서는 각각 “건물의 양식과 외형에 손상이 없도록”, “공사착수 이전의 건물형태를 그대로 복원(復元)”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을 적고 있다.

즉, 남대문수리공사의 보존원칙은 필요시 검토를 거쳐 양식 혹은 보강을 위한 현상의 변경을 허용하지만, 기본적으로 계획수립부터 이후 준공까지 변함없이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사계획」에 적힌 “원상대로 복구”로 대표될 수 있다. 여기서 ‘원상’은 『수리보고서』 등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해체 당시의 건축양식’, ‘해체 전의 양식’, ‘공사착수 이전의 건물 형태’를 의미하며(표 1), 이는 필자가 앞서 전제한 창건 및 역대를 거쳐 남아있는 모습으로서 ‘원상’과 유사하다.²³⁾ 현재 주로 사용하는 ‘원형(原形)’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서술한다.

20) 이보다 앞서 1958년에 무위사 극락전 수리공사가 진행되었지만 이 수리는 수리규모와 인원조직 측면에서 남대문수리공사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2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1966, 전거서, III쪽

22) 원칙은 방침, 목적 등의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전후 문맥상 원칙의 서술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23) 해당 용어의 1950년대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국어대사전』(영창서관, 1954)에서 ‘원상(原狀). 근본의 형편, 근본되는 상태’를, ‘원형(原形) 본디의 형상’으로, 1960년대에 『국어대사전』(동아출판사, 1963)에서 ‘원상(原狀) ①근본되는 상태나 형편. ②본디의 형편이나 상태’, ‘원형(原形) 본디의 형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앞서 서술한 오늘날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의 사전적 의미와 거의 같다. 두 용어의 의미는 유사하지만 원상은 모습을 포함한 상태를, 원형은 모양에 중점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 남대문수리공사에서 보존원칙과 관련된 서술

출 처	보존원칙 관련 서술
「남대문중수공사계획」 1961.7.5	“가. 목적. 국보제1호인 남대문을 원상(原狀)대로 복구(復舊)함에 있다” (『서울남대문수리보고서』, 34쪽)
최용완, 「서울남대문중수공사를 참관하고」, 『건축』1963	“복원공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해체당시의 건축양식을 복원기준으로 하여 ... 건물을 위한 조작용은 건물의 양식과 외형에 손상이 없도록 하였다”
『서울남대문수리보고서』 1966	제2장 수리개요/ 제1절 시공방침/ 1.본공사 중 “... 해체전 또는 해체중의 각종 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건물의 양식상 새로운 사실이 알려진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건물복원(復原)에 적용하되, 기본적으로는 해체전의 양식을 위주로 하여 복원(復原)하기로 하였다.”
	제2장 수리개요/ 제4절 현상변경 중 “본 중수공사의 당초부터의 방침은 공사착수 이전의 건물 형태를 그대로 복원(復元)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 제2장 수리개요/ 제5절 시방서/ 5.복원(復原)공사/ (5)건물복원(復原)공사 중 “건물복원(復原)은 본공사의 가장 중요한 공사이며 원래의 건물을 재건하는 것이다”

한편, 착공 전에 작성된「공사계획」에서 행위의 성격을 가리키는 용어인 ‘복구’는 준공 후에 작성된 글에서 ‘복원’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당시 수리의 전반적 성격을 초기 모습으로의 변경하는 수리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사용된 ‘복원’이라는 용어는 언급된 장, 절이 어디인지와 전후 맥락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서 해석해야 한다.²⁴⁾

남대문수리공사에서 ‘복원공사’는 ‘가설공사 - 현상실측 - 사진촬영 - 해체공사 - 복원공사 - 환경정리공사’로 이어지는 전체 공정 중의 하나로 서술되었고, 여기서 사용된 ‘복원’은 해체된 부재의 재조립으로서 이는 현재 시방서에서 ‘조립’으로 부르는 것에 해당한다. 이는 초기의 모습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로 의미하는 오늘날의 ‘복원’과 다르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 1950~70년대에 자주 혼용되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남대문수리공사 관련 기록에서 ‘복원’의 한자 표기는 復原, 復元, 複原, 複元이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다른 한자 표기가 문장의 맥락상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으며, “石築復元工事を 錯誤없이

24) 복원의 1960년대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국어대사전』(동아출판사, 1963)에 ‘복원(復元) 원래대로 되는 회복함’으로 기술되어 있다.

圓滑하게 進行하기 위해서 ... 石築復原時에...”²⁵⁾에서 처럼 한 문장 안에서 復元과 復原의 두 표기가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 기록자 개인별 이해의 차이도 아니다. 이는 당시 ‘복원’의 개념에 대한 혼란을 잘 드러낸다.

종합하면, 1961년 남대문수리공사의 보존원칙은 퇴락과 전쟁으로 파손되기 이전으로의 ‘원상 복구’이다. 이는 초기 양식을 찾아 변경하는 ‘양식적 복원’과는 온전히 대치되고, 불안정한 구조재는 대체 혹은 보강하되 외관상 혹은 양식상으로는 수리 직전의 모습, 즉 역대 개조를 거쳐 내려온 지금의 모습을 대체로 보존하는 ‘현상적 보존’과 공통점을 보인다.²⁶⁾

남대문수리공사에서 헛초공과 포벽을 제거하는 등 일부 부재를 변경하는 조치가 있었으나 건축의 전체 외관 형식은 변경하지 않았다.²⁷⁾ 특히 해체조사의 과정 중 지붕형식이 현재의 우진각지붕이기 이전에 팔작지붕이었던 흔적이 부재에서 드러나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으나 “이들 발견된 사실 만으로서는 건물을 완전히 복원할 수 없었던 것과 또 그에 따라 복원한다면 공사착수 전의 건물의 형태와 복원될 건물의 형태 간에 너무나 큰 차이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²⁸⁾ 초기 모습으로 복원하지 않은 사실은 당시 보존원칙의 전체상을 잘 보여준다.

3-2. ‘석굴암수리공사’의 보존원칙: 원형복원

(1) 석굴암수리공사에서 보존원칙의 변화

석굴암은 남대문수리공사가 착공된 것과 같은 해인 1961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공사 전 2년 9개월에 걸쳐 ‘조사와 예비공사’를 먼저 거친 후에야 ‘본공사’가 착공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남대문수리공사가 준공되고 난 뒤에 시작되었다. 이런 시간적 차이는 남대문수

2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1966, 전제서, 41쪽

26) 공사를 위해 같은 해 7월 7일 조직된 ‘남대문중수공사지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세운 다섯 가지 원칙으로는 최대한 현 재료를 사용하고 대체 석재는 원석과 동질의 것으로 하며, 모두 국산으로 하고 권위 있는 기술진을 총동원하며, 학술 및 기술적 문제를 기록한다는 것이다.(안병욱, 「남대문 중수공사를 마치고」, 신세계, 1963년 7월호) 이 다섯가지는 수리원칙에 속하는데, 그중 세 항목이 재료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공사의 보존원칙이 ‘원상 복구’로 정해진 전제하에 공사의 착수에 임하여서 주요 관심이 건축형식에 대한 흔적의 조사와 그에 근거한 초기 형식으로서의 변경과 같은 양식연구와 복원이 아니라, 파손의 개선을 위해 사용될 대체재의 최소사용과 그 조건에 있음을 방증한다.

27) 구조적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녀 윗뿌리쪽과 귀한대머리, 평방 이음, 고주머리가 보강되고 덧서까래가 추가되었는데, 이런 조치는 주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한하여 시공되었다.

28)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1966, 전제서, 36쪽

12 논문

리에서의 경험이 석굴암수리에서 전제됨을 의미한다.

표 2. 석굴암수리공사에서 보존원칙과 관련된 서술

출 처	보존원칙 관련 서술
「제1차 석굴암보수공사시방서」1961.1	“가. 공사개요: 본공사는 현황 석굴암의 원상(原狀)을 훼손 또는 사소한 변형을 불허함을 공사주요사항으로 하고 …”(『석굴암수리공사보고서』, 246쪽)
「1961년도 석굴암보수공사 진행계획서」(1961년 9월~12월 제작 추정)	“1.공사범위 … (2)발굴작업 개시: 본 작업은 창건당시 사용한 원석제와 원지판을 찾아내어 설계에 따른 계획에 자료로 삼고저함 … (11)설계: … 석굴경면 시설은 신라 고식(古式)을 따라 웅대한 예술적 기품을 살려야 …”(동 보고서, 139쪽)
「제3지침서 (1962년 4월~6월)」	“2.공사지침… (나)사지 조사: 석굴암 계곡 일대에 대하여 창건당시의 사지를 발굴조사하여 석굴암복원(復元)공사계획에 반영시킬 것”(동 보고서, 140쪽)
「제4지침서 (1962년 7월~9월)」	“석굴암보수공사에 대하여 … (라) 복원(復元)고찰: 사계의 권위자를 초빙하여 조사단을 구성하고 굴내외 전체에 대한 결론적인 복원 고찰을 할것.”(동 보고서, 141쪽)
「시방서 (1963.3)」	“목적. … 석굴내 제불상 및 석조각물의 풍화 오염 및 침식을 방지하여 이의 현상유지를 기하고 아울러 변형된 굴전실부의 복원(復元)과 굴 주변환경의 정리 미화함을 목적으로 한다”(동 보고서, 144쪽)
『석굴암수리공사보고서』 1967	‘제4장 공사내용대요’ 중 “조사와 예비공사는 … 창건이래 … <u>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간에 변화되거나 소멸된 부분을 고찰하여 가능한 한 복원(復元)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u> …”(동 보고서, 30쪽)

석굴암수리공사는 발굴과 조사의 진행에 맞추어 유통성 있게 공사지침을 정하였는데, 착공 전 계획에서부터 마지막 「제7지침서」, 그리고 준공 후 작성된 『석굴암수리공사보고서』중에서 보존원칙과 관련된 서술은 ‘표 2’와 같다.

석조각의 오염 및 석굴 내부 환경 문제에서 시작된 석굴암 공사를 위해 1961년 1월 처음으로 작성된 「제1차석굴암보수공사시방서」 방안에서는 먼저 “원상을 훼손 또는 사소한 변형을 불허”한다고 하였고²⁹⁾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도 공사의 “시초부터 현상을 그대로 두고 복원(復元)하려 했던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석굴암수리공

29) 배기형에 의해 작성된 이 방안은 설계수정과 추가항목이 생기면서 같은해 5월 24일 문화재보존위원회(‘문화재위원회’의 전신) 제1분과의 회의에서 폐지되었다. 하지만 2중됨을 설치한다는 개념은 유지되었다.

30) 1963년 10월 12일 제16차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문화재판

사도 초기 모습으로의 변경이 아닌 남대문수리공사처럼 ‘현상적 보존’ 원칙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1년 9월 ‘조사와 예비공사’의 시작 즈음에 작성된 「1961년도 석굴암보수공사 진행계획서」를 보면 창건 시의 모습을 파악하여 계획 시 자료로 삼기 위한 굴동면 석축의 발굴작업과 특히 석굴 정면에 ‘신라고식’을 따른 시설을 덧붙이기 위한 설계작업이 명시되어 ‘현상’이 변경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발굴조사가 진행되던 1962년 초에 마련된 「제2지침서」에서 ‘… 現地 氣像 상황을 파악하여 전체 復元計劃에 반영시키려함’이라는 기록과 「제3지침서」에서 ‘창건 당시의 寺址를 발굴 조사하여 石窟庵復元工事計劃에 반영시킬 것’이라는 기록에서 석굴암 일대의 사지를 포함한 범위에 창건 시기로 변경하는 복원 조치가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석굴암의 복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복원 의미의 변화이다. 석굴암에서 사용된 ‘복원’은 앞서 남대문수리공사에서와 같이 단순히 해체 후의 재조립이나 훼손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고, 동시에 초기 모습으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혼용되며 사용되었다. 이는 이후 마련된 일련의 지침서에서 다수 확인된다.

발굴과 조사가 절반 정도 이루어졌던 1962년 7월의 「제4지침서」에는 “(라)復元考察” 항목이 처음으로 등장하며 “窟内外 전체에 대한 결론적인 복원 考察”을 명시하였고, 본공사를 앞두고 1963년 6월에 작성된 「제7지침서」에 “石窟庵復元工事”를 적고 있다. 석굴암의 조립공정 즈음에 이 지침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복원’은 앞서 남대문 수리에서처럼 해체 후의 조립단계를 가리키지만, 남대문 수리와 달리 석굴암에서는 복원이 ‘고찰’과 함께 명시됨으로써 더이상 단순한 조립의 의미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1963년 3월 작성된 「시방서(1963.3)」에서 “변형된 窟前室部の 復元”이라는 기록 및 『석굴암수리공사보고서』(1967년)에서 “創建以來 …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간에 변화되거나 消滅된 부분을 考察하여 가능한 한 復元할 수 있도록 함을 그 目的으로”의 기록 등에서 복원이 단순 조립이 아닌, 창건 시 모습이 ‘변형’되었음을 전제하고 창건 시 모습을 지향한 변경 조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복원’을 한자 ‘復元’³¹⁾으로 표기한 점이다. 이

리국, 『석굴암수리공사보고서』, 1967, 212쪽)

31) 자전적 의미를 보면 ‘元’은 一(한 일)과 兀(우뚱할 울)이 합쳐진 것으로 우두머리, 시작을 의미하고, ‘原’은 厂(기슭 엄)자와 泉(샘 천)

는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復原’과는 다르지만, 앞서 발행된 『서울남대문수리보고서』를 비롯하여 석굴암 이전의 공사 기록물에서 復原, 復元, 複原, 複元 등이 혼용되었던 것으로부터 일정부분 귀결된 것이다.

한자 사용의 속고는 해당 용어의 의미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석굴암수리에서는 복원이 기존의 조립공정과 다른 의미임을 인지하고, 고찰을 거쳐 파악된 원형의 회복 의지를 담기 위해 ‘復元’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조립공정으로서의 복원과 초기 모습으로 변경의 복원에 대한 구별이 필요해진 것이다.

정리하면, 석굴암수리공사의 보존원칙으로 처음 공사계획 단계에서는 남대문수리공사와 마찬가지로 ‘현상적 보존’이 제시되었지만, 조사와 예비공사가 진행되면서 1962년에 ‘양식적 복원’으로 학술적, 실무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된 ‘복원’이라는 단어는 남대문 수리에서와 달리 초기 모습으로의 회복 의지를 담고 있다.

(2) 석굴암수리공사의 특수성

원칙의 이러한 변화는 남대문 수리와는 다른 석굴암 수리가 지닌 두 가지 특수성에 근거하여 필연적으로 도출된 것이다. 첫째, 전실을 덮는 구조물의 복원적 설계이다. 본공사를 앞두고 수립된 「시방서(1963.3)」를 보면 당시 공사는 “石窟內 諸佛像 및 石彫刻物의 風化汚染 및 侵蝕을 방지하여 이의 현상유지를 기하고 아울러 변형된 窟前室部의 復元과 窟 주변환경의 정리 미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공사 목적으로 기존 돔 부분의 현상유지와 전실 부분의 복원, 주변 환경의 정리의 세 가지를 열거하였다. 즉, ‘조사와 예비공사’를 거친 후 1963년 ‘본공사’를 시작할 때 수리 목적 중의 하나로 전실부에 대한 ‘복원’을 정하였고 이는 석굴암 수리가 남대문수리와 다름을 보여준다.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에 살펴보면 초기에 복원 논의의 대상은 전실을 덮는 구조물에 있었다. 전실 구조물의 형식에 대해서 1961년 6월 7일 논의에서 ‘푸라스틱’ 지붕 안과 목조의 ‘고전적’ 방안 중에 첫 번째 방안이 선택되며 “原狀復舊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何時든지 ‘푸라스틱’을 除去하고 原形을 復舊하도록 하자”는 전제조건을 달아 현상이 변경되는 것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³²⁾ 하지만 복원적 논의가 본격화되던

자가 결합된 것으로 물이 시작된 곳, 근원, 근본을 의미한다.

32) 문화재관리국, 전게서, 1967, 200쪽

이듬해 1962년 10월 22일 회의에서 ‘푸라스틱’ 전실의 설계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와 목조 전실이 있었던 흔적 및 기록에 근거하여 고전적 방안으로 변경되고 이후 11월 23일 전실은 ‘고전미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2층 팔작집 지붕모양’으로 결정된다.³³⁾ 즉, 석굴암 정면의 현상변경은 어떤 식으로든 불가피하였는데 전통적 목조건축 방안이 결정됨으로써 ‘복원’적 방향이 정해진 것이다.

둘째, 전실 내 팔부신장(八部神將) 석조각 중 90°로 꺾여 배치되어있는 마지막 2구를 펼치는 복원적 변경이다. 1962년 11월 23일 회의에서 전실 석조각 중 ‘內部를 向하고 있는 二軀의 八部神將을 다른 八部神將線에 맞도록 펴서 前室平面을 넓힌다’고 결정되었는데,³⁴⁾ 석조각 원부재를 직접 변경하는 것은 전실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에 수차례 재검토되면서 공사 중후반기에 복원 논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1963년 1월 29일 굴곡부의 전개(展開)와 관련된 근거를 두고 논의가 시작되어³⁵⁾ 같은 해 2월 27일 전개한다는 기존의 설계를 일단 보류하고³⁶⁾ 8월 14일 굴곡부가 일제강점기에 임의로 시공되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현상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재론한다”고 결정한다.³⁷⁾ 그러다가 같은 해 10월 12일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증방석 등 조사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친 끝에 굴곡부를 펼치기로 다시 최종 결정하였다.³⁸⁾ 그 결정의 배경에 해방 후 문화유산의 주체적 조사와 연구에 대한 민족적 자존심도 있었던 점³⁹⁾ 흥미롭다. 당시 판단이 순수하게 학술적 근거만에 의존하지 않은 지점이 있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돔 내부의 풍화를 완화하기 위한 2중 돔의 신축이나 전실의 보호를 위해 정면에 굴침(窟檐)을 덧붙이는 것과 같은 보호적 조치와 달리, 전실 내 팔부신장 2구의

33) 문화재관리국, 전게서, 1967, 202쪽

34) 문화재관리국, 전게서, 1967, 202쪽

35) 1963.1.29. 제1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국가기록원

36) 문화재관리국, 전게서, 1967, 203쪽

37) 1963.8.14 제1분과위원회 제11차회의. 국가기록원. 문교부 문화재관리국, 전게서, 1967, 209쪽

38) 1963.10.12 제1분과위원회 제16차회의. 국가기록원. 문교부 문화재관리국, 전게서, 1967, 211~213쪽

39) “... 眼象石部分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점을 볼 때 결과적으로 굴곡부를 펴지 않는다면 日本人들이 행한 것을 추종한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본다. 우리가 考證하고 研究한 결과에 따라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등등 다수. 문화재관리국, 전게서, 1967, 113쪽

14 논문

배치를 펼치는 것은 보호를 위한 조치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 팔부신장 2구가 깎여 있는 것이 창건기 모습인지 아닌지는 이 글에서 논외로 하고, 보호적 필요와 별개인 팔부신장 2구를 펼친 조치는 전실의 ‘창건기’ 모습에 대한 당시 나름의 학술적 결과이자 일제강점기 석굴암 수리에 대한 민족적 평가라는 시대적 대응이었다.

석굴암은 전통건축형식의 굴침건축을 덧붙임으로 인해 외관이 수리 전과 크게 달라지며 복원적 수리의 경향을 보여주지만, 석굴암에 대한 복원적 수리 의지를 알린 것은 팔부신장 2구를 펼친 순간이었다. 그 조치의 시비를 떠나 조치 행위 자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건축유산의 보존원칙이 최소개입적인 ‘보수’에서 초기 원형으로의 ‘복원’으로 변화된 순간으로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4. 원상, 원형, 복원 용어 의미의 변화

보존원칙의 변화는 원칙 관련 용어의 의미 변화와 함께 진행됨이 관찰된다. 남대문수리공사와 석굴암수리공사 중 보존원칙의 서술에 사용된 용어는 오늘날 사용하는 의미와 일부 다르기 때문에 의미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진행된 다른 수리에서 전문가들이 사용한 해당 용어의 의미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보존과 수리 행위의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원상, 원형, 현상 등이 있고 수리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는 보존, 보수, 보수 등의 통칭 외에 복구, 복원, 이건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중에서 이 시기 의미가 변화되어 해석의 여지가 있는 용어는 ‘원상’과 ‘원형’ 및 ‘복원’이다. 이들 용어 의미의 변화 분석을 위해 남대문수리와 석굴암 수리와 관련된 보고서뿐만 아니라 그 외에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의 1952년부터 1959년 사이의 회의 기록과 ‘문화재보존위원회’의 1960년대 회의 기록, 1962년 이후 ‘문화재위원회’의 회의 기록 및 관련 수리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들 용어의 사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4-1. ‘원상(原狀)’, ‘원형(原形)’의 의미

(1) 1950년대~1960년대 초: 지금까지의 모습

1950년대에 ‘원상’과 ‘원형’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문장마다 맥락의 파악을 요한다. ‘표 3’에서와 같이 원상은 (건물을) “원상 그대로 이건”, “원상대로

보수”, (넘어진 석상을) “원상복구”, (발굴 후) “원상복구” 등으로 사용되었다. 정리하면 원상은 ‘①지금까지의 모습’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창건 이후 ‘역대 변화를 거처온 지금의 모습’을 말한다. 또한 좀더 상세히 보면, 창건기의 모습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면서 이건이나 발굴, 훼손 등 비교적 근래 발생한 개입 때문에 변경되기 전의 공유된 기억 속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를 ‘근래 개입에 의한 변경 이전의 모습’을 별도 분류할 수 있다.⁴⁰⁾ 1961년 「남대문중수공사계획」의 “원상대로 복구”에 사용된 ‘원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다.

건축물이 창건된 시기 또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모습을 가리키는 뜻으로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원형(原形)’이라는 단어는 당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원상’이 원형을 대신하여 그러한 ‘②초기의 모습’이라는 의미로 드물지만 사용되었고, 동시에 ‘고식(古式)’, ‘고격(古格)’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였으나⁴¹⁾ 그 수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석굴암의 ‘조사와 예비공사’를 위해 작성된 「1961년도 석굴암보수공사 진행설계서」에서 “窟東面石築을 제거(이는 환경정리時 古式으로 축조기 위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임)하여 원상(創建時道路 또는 石壇)을 조사하여 계획상 좋은 자료를 삼고저 함”이 있다.⁴²⁾ 이 문장에서 원형은 사용되지 않았고, 원상과 고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특히 여기서 원상 뒤 괄호 안에 ‘창건 시’를 명시한 것은 원상의 중의적 혼용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구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 들어서면 원형이라는 단어가 1950년대보다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원상(原狀)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며 혼용되었다. 석굴암 수리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1년 6월 7일 전실 구조물 관련 논의에서 “原狀復舊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何時던지 「푸라스틱」을 除去하고 原形을 復舊하도록 하자”고 하여 한 문장에서 원상과 원형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사용된 ‘원형’은 ‘원상’과 함께 수리과정 중 변경하지 말아야 할 지금 모습을 가리키지, 변

40) 어떤 문화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이유는 훼손 등이 발생하여 논의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서나 문화재위원회회의록에서 원상 용어가 ‘근래 개입에 의한 변경 이전의 모습’ 의미로 사용된 사례가 많고 이때 의미는 ‘초기의 모습’과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재분류하였다.

41) 1966년 『서울남대문수리보고서』 ‘제4절 현상변경’ 중 “근세에 와서 변경은 이를 신중고찰하여 고식으로 복원하여야 할 점이 있을 경우 … 현상변경을 하기로”

42) 문화재관리국, 전계서, 1967, 138쪽

경을 통해 복원하고자 하는 현존하지 않는 초기의 모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표 3. 1950년대~1960년대초 원형 관련 용어의 사용 사례

용어	사용 사례
원상 (原狀)	<p>①'지금까지의 모습' 의미 —역대 변화를 거친 현재의 모습 • 1958.3.25 “동경관보수: 해체하여 경주박굴관 구 내에 원상 그대로 이진기로 한다”(『문화재위원회 회의록(1952년 12월19일부터 1959년 10월21일 까지)』. 문화재관리국, 1992, 48쪽) • 1962.10.22. 오죽헌단청공사 중 “기타의 보수는 원상(原狀)대로 보수토록”(문화재관리국, 『문화재』부록-문화재위원회회의록, 1965, 60쪽)</p> <p>—근래 개입에 의한 변경 이전의 모습 • 1958.7.4 “국보제322호 석조삼존불 입상은 넘어진 경위를 밝히고 원상복구한다.”(문화재관리국, 전게서, 1992, 55쪽) • 1959.7.31 “발굴후 원상을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문화재관리국, 전게서, 1992, 81쪽) • 1961.2.23 강릉객사문과 강릉 문묘대성전의 불법적 수리에 대해 “원상과 많은 변경이 되어있었다”(『문화재보존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제1회 회의록』, 국가기록원 기록)</p> <p>②'초기의 모습' 의미 • 1958년 『무위사 극락전 보고서』중 ‘제2절 현상변경’ “당초의 상태를 변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그중 보존상의 견지에서 복구를 필요로 하는 점에 대하여서는 … 다음과 같이 원상으로 복구하였다” • 「1961년도 석굴암보수공사 진행설계서」중 “굴동면석축을 제거(이는 환경정리시 古式으로 축조키 위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임)하여 원상(創建時 道路 또는 石壇)을 조사하여 계획상 좋은 자료를 삼고저 함”</p>
원형 (原形)	<p>①'지금까지의 모습' 의미 —역대 변화를 거친 현재의 모습 • 1961.9.4 관룡사 대웅전 보수공사에 대해 “원형과 동일한 형식수법에 의하여 보수”, “가공방법 등은 재래형식을 모방하여 원형을 구축할 것”(『문화재보존위원회 제1분과 제8회 회의 부의안』, 국가기록원 소장) • 1961.11.28. 금산사미륵전 옥개수리공사에 대해 “재래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문화재보존위원회 제1분과 제11회 회의 부의안』, 국가기록원 소장) • 1962.10.22. 청송사지삼층석탑 보수공사 중 “...원형(原形)에 손상과 변경됨이 없이”(문화재관리국, 전게서, 1965, 60쪽)</p> <p>—근래 개입에 의한 변경 이전의 모습 • 1961.5.24. 강릉 객사문과 강릉 문묘대성전 조사 중 “(1)... 옥개 해체공사 당시 물매곡선등을 실측없이 실시하여 원형을 상실하였음. (2)부패한 연목 3개를 원형과 동일하게 교체하였으나 균형이 정리되지 않음 ...”(『문화재보존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제4회 회의안』, 국가기록원 소장)</p>

(2) 1960년대 중후반 이후: 초기의 모습

조사와 예비공사를 통해 석굴암 발굴조사의 결과가 드러나고 이어서 본공사를 앞두고 있던 1963년 초부터 석굴암 전실 팔부신장 2구의 전개 여부를 중심으로 전실부의 고식과 그 복원에 관한 논의가 수차례 진행되는데, 이 시기에 ‘원형’은 그 이전의 의미와 다름이 확인된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63년 1월 29일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石窟庵 石窟工事 設計變更: 前室 前部の 屈曲을 폐기로 設計進行中이나 屈曲을 두는 것이 原形이라는 有力한 證據가 나타났으므로 ...”하였는데, 여기서 ‘원형’은 명확히 초기로 추정되는 모습을 의미한다.

팔부신장의 굴곡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 1963년 10월 12일 제1분과위원회 제16차회의에는 흥미롭게도 ‘원상’이나 ‘원형’이라는 단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일본인의 중수당시의 것”, “원래가 격여져 있던 그대로”처럼 표현하였다.⁴³⁾ 그러나 회의를 보면, 일제강점기의 수리 기록과 수법, 새로 발견된 하방석(下枋石)과 첨차석의 모양, 괴산 미륵당 석불 전실의 연구 등을 근거로 제시된 팔부신장을 펼친 모습은 수리 전의 모습을 가리키는 ‘원상’과는 다른 것임을 인지하고, 발굴조사와 연구를 거쳐 점차 공사에서 목표로 삼을 ‘어떤 모습’을 도출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원형’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원상’과 분리해가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추정된 그 모습이 과연 ‘원형’인지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용어를 신중히 사용해야 함을 인정하는 과정이었다.

이즈음부터 용어의 사용이 신중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석굴암뿐 아니라 다른 수리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서 수리 방안에 대해 그 전에 자주 사용하던 ‘원상대로’, ‘원형대로’ 수리한다와 같은 표현이 이전과 비교하여 매우 드물게 사용되고 대신 ‘원안대로 시행’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⁴⁴⁾

43) 문화재관리국, 전게서, 1967, 211~213쪽

44) 1964년 9월 11일 제10차 회의 “송광사 하사당 보수설계: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함”(문화재관리국, 『문화재』, 부록-문화재위원회회의록, 1966, 110쪽) 등 다수 있음

표 4. 1960년대 중후반 이후 원형 관련 용어의 사용 사례

용어	사용 사례
원상 (原狀)	<p>① '지금까지의 모습'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3.8.14. 석굴암의 “팔부신장을 펴는 것과 원상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하여는 완전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희박한 근거 뿐이므로 … 확실한 어떤 근거가 나올때까지는 지금의 현상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부록-문화재위원회회의록, 1966, 37쪽) 1964.8.13. 행주산성 관련 내용 중 “현재의 원상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 (문화재관리국, 전게서, 1966, 104쪽)
원형 (原形)	<p>① '지금까지의 모습'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5.4.2. 경북궁 단청 중 “(1) 자경전. 고색단청으로 하되 원형대로 복원할것; (2) 수정전. … 건물내부는 원형대로 복원하기로 함; (3) … 향원정의 다리는 원형대로 보수하기로”(문화재관리국, 『문화재』, 부록-문화재위원회회의록, 1967, 9~10쪽) <p>② '초기의 모습'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3.1.29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중 “석굴암 석굴공사 설계변경: 전실 전부의 굴곡을 펴기로 설계진행중이나 굴곡을 두는 것이 원형(原形)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나타났으므로 양자중 택일하여 3월 초순에 위원회에서 현지조사 후 최종결정하기로…” (문화재관리국, 전게서, 1966, 4쪽)⁴⁵⁾ 1963.2 쌍봉사 대응전 수리 중 지붕이 팔작이 아닌 사모였다는 흔적을 발견한 이후 “현상대로나 원형(原形)을 찾아 복원할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현상대로 복원하자는 논의 우세하였다. 사모지붕이 원형이지만…” (신영훈, 『쌍봉사 통신』, 『고고미술』, 1963)

변화 과정을 종합하면, '원형'이 어떤 대상의 회복하고자 하는 현존하지 않는 초기 모습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초기 모습에 대한 학술적 근거와 연구를 전제한다. 해방 후 1960년대 초까지 주로 이루어진 손상부재의 교체라는 복구적 수리에서는 '수리전의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를 주로 필요로 하였다. 그런데, 석굴암의 수리과정 중 고고발굴 등을 통해 현상태와 다른 초기의 모습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이를 명확히 가리키는 단어가 필요하게 되면서 '원형'이 특정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원형'이 '원상'과 같이 수리과정 중 변경되지 않아야 할 '지금까지의 모습'이라는 뜻으로도 역시 여전히 혼용되고 있음도 확인된다. 즉 '원형'은 현재의 모습과 옛 모습을 모두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 다른 의미

45) 『석굴암수리공사보고서』 203쪽에는 해당 회의가 2월 27일로 기록되어 있음.

로 사용되었는데, 이런 '원형'의 중의성은 현재까지도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원형'이라는 단어가 초기의 모습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함은 해방 후 진행된 한국건축의 역사적 연구에 대한 당시 나름의 학술적 논의를 반영한다.

4-2. '복원(復原)'의 의미

(1) 1950년대~1960년대 초: 부재의 재조립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에 기록된 '복원'은 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표 5)

첫째, 파손 혹은 수리행위에 의해 해체된 부재의 재조립이다. 이는 파편화된 부재의 재조립 보수가 많았던 석조물에서 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 신세동 7층석탑의 “해체 복원”, “황산대첩비 파비는 모아서 몰탈로 붙여 복원한다” 등 매우 많은 사례가 있다. 이 용어가 목조건축물에서 사용될 때도 수리 시 구조물을 해체한 뒤 재조립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하나의 공정 명칭으로서 보고서마다 해체 후 이어지는 '조립공정'을 '복원공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남대문 수리공사에서 본공사의 시공방침으로서 “해체전의 양식을 위주로 하여 복원하기로 하였다”고 한 것과 본공사 중 '복원공사'의 시방서에서 “건물복원은 … 원래의 건물을 재건하는 것이다”(표 1 참고)에서 사용된 '복원'은 기본적으로 재조립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표 5. 1950년대~1960년대초 복원 용어의 사용 사례

용어	사용 사례
복원 (復原)	<p>'부재의 재조립'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7.8.9. 지정문화재 보수공사 일람표 중 목조에 대해 “건물보수”, “해체보수”, 석조에 대해 “석조물 보수”, “해체복원(신세동7층석탑)” 등 (문화재관리국, 전게서, 1992, 36쪽) 1958.7.4. “황산대첩비 파비는 모아서 몰탈로 붙여 복원한다”, 파손된 “황산대첩비의 파비를 모아서 복원”, 석탑이나 석등 등의 “해체복원” (문화재관리국, 전게서, 1992) 등 다수 <p>'멸실된 것의 재건'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7.8.9. “진주축석루 복원설계” (문화재관리국, 전게서, 1992) 등

둘째는 멸실된 것을 복구 혹은 재건하는 의미이다. 한국 전쟁시 전소된 “진주축석루 복원설계”에서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멸실된 것의 복구 혹은 재건으로서의 복원은 오늘날 광의의 의미로 남용되는 복원의 사용과 일치한다.

복원이 고증을 거쳐 초기 모습으로의 변경의 의미로 사용된 예는 매우 드물며,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복원’의 주도적 의미는 ‘부재의 재조립’이었다.

(2) 1960년대 중후반 이후: 초기 모습으로의 변경

앞서 ‘3-2’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석굴암을 수리하는 과정 중 ‘복원’이 재조립이라는 공정적 의미에서 초기 모습으로의 변경을 의미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석굴암 수리에서 분명하게 정의된 ‘복원’의 의미는 이 시기에 진행된 다른 공사에서도 점차 등장하고, 동시에 기존의 의미 역시 존재하면서 혼용되었다.

1963년 쌍봉사 대웅전 수리에서 지붕이 팔작이 아닌 사모였다는 흔적을 발견한 후 “現像대로나 原形을 찾아 復原할 것이냐의 問題였는데 現狀대로 復原하자는 論이 優勢하였다. 사모지붕이 原形이지만 其以上の 結構, 즉 相輪部の 形狀을 모르는 以上 섯빨리 손댈 수 없다는게 理由였다. 層前面의 開放部の 後補物은 古格으로 復原하였다”⁴⁶⁾에서 ‘현상’과 ‘원형’ 단어의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現狀대로 復原’에서 복원은 해체된 것을 재조립하는 것이 되고, 이에 반해 ‘古格으로 復原’에서 복원은 형식을 변경한다는 뜻으로서, 즉 한 문단 안에서 ‘복원’이 두 가지 의미로 여전히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1960년 후반 들어 목조건물의 수리가 변화나 서까래 교체에 그치지 않고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수리가 증가하면서 “해체복원”이라는 단어가 다수 사용되었다. 그 뜻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 수리 내용을 살펴보면,

가령 ‘표 6’에서 언급된 나주향교는 1972년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1977년에 동의사, 서익사, 삼문의 수리가 이루어졌는데 수리 후 발행된 보고서의 수리지침에서 외삼문은 “추녀2개소, 서까래 28본을 신재로 교체한다”고 적고 있고 동의사, 서익사, 내삼문은 “현존건물은 원형변경이 심하고 부식재가 많으므로 부분해체하고 원형을 찾아 보수한다”고 적고 있다.⁴⁷⁾ 즉 “해체복원”에서 ‘복원’은 어떤 건물에서는 해체 후 재조립의 의미를, 어떤 건물에서는 초기 모습으로 변경하는 의미로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경계는 모호하다.

표 6. 1960년대 중후반 이후 복원 용어의 사용 사례

용어	사용 사례
복원 (復原)	‘부재의 재조립’ + ‘초기 모습으로 변경’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4.10.30. “여수진남관 보수공사 설계도 검토: 원안대로 전면해체 복원공사 하도록 하며...” (문화재관리국, 전게서, 1966, 114쪽) 1971. “안동 임청각: 해체복원”(문화재관리국, 『문화재』, 부록-문화재위원회회의록, 1971) 1972. “나주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공사내용-1)부분해체복원, 단청, 기단 및 참배로 보수 2)산문 해체복원”(문화재관리국, 『문화재』, 부록-문화재위원회회의록, 1972)
	‘초기 모습으로 변경’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3.2 쌍봉사 대웅전 수리 중 “층전면의 개방부의 후보물은 고격으로 복원하였다”(신영훈, 전게서, 1963) 1973~1974 “극락전 복원공사설계가 승인되어”, “극락전 복원공사에 따른 설계변경”, “극락전 복원공사 준공”(문화재청, 『봉정사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1992, 45~46쪽)⁴⁸⁾



그림 2. 원상, 원형, 복원 의미 변화의 도식화

46) 신영훈, 『쌍봉사 통신』, 『고고미술』, 1963. 한편 쌍봉사 대웅전은 이후 1984년 화재로 전소되고 보물 지정이 해제되었는데, 이후 1986년 사모지붕으로 복원된 사실은 1960년대와 1980년대 복원판단의 차이를 보여준다.

47) 나주시, 『나주향교 대성전 수리보고서』, 2008, 68~69쪽

48) 봉정사 극락전은 기단, 목부, 단청 등에서 수리중 발견되는 자료에 근거해 추정된 “원형”으로 “복원”됨에 따라 수리 전후 건축의관이 크게 변경되었다.

이후 ‘복원’의 의미는 점차 조립 혹은 복구의 의미와 구별되어 초기 모습으로 변경으로의 의미가 점차 주도적 의미가 되어 1969년 발굴로 시작된 불국사 복원공사와 1971년 해체실측으로 시작되어 복원된 봉정사 극락전 수리공사로 이어졌다.

‘복원’의 의미 중 멸실된 것의 재건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공정으로서의 복원은 ‘조립’이라는 명확한 용어로 대체되면서 거의 사라졌다. 동시에 초기 모습으로 변경의 의미가 점차 확대되었는데, 이는 고증을 거쳐 도출된 ‘초기 모습’에 대한 개념 수립과 명칭 부여를 전제로 하고 ‘원형’이라는 용어가 바로 그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원형’과 ‘복원’은 각기 보존의 ‘대상’과 ‘방법’으로서 동시에 의미 부여되고 이후 그 사용이 점차 증대되었다.

5. 결론

이 글은 해방 후 건축유산의 보존원칙이 탐색되던 과정 중 원칙의 모색과 적용의 실험 현장으로서 1960년대 초 기념비적인 두 수리인 ‘남대문수리공사’와 ‘석굴암수리공사’를 주목하고, 건축유산 보존사적 관점에서 한국의 보존원칙이 수립되고 또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1년 시작된 남대문수리공사의 주된 보존원칙은 ‘원상복구’로서 이는 건축 양식 혹은 모습에 있어 역대를 거치며 지금까지 남겨진 모습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는 ‘현상적 보존’ 원칙에 해당한다. 같은 해 시작된 석굴암수리공사에서도 처음 공사계획 단계에서는 ‘현상적 보존’이 제시되었지만, 조사와 예비공사를 거쳐 1963년경에 ‘복원’적 원칙으로 변화되었고 이는 초기 모습으로 변경하는 ‘양식적 복원’에 해당한다.

둘째, 석굴암수리공사에서 ‘복원’적 원칙으로의 변화는 석굴암 전실 보호를 위한 추가 구조물의 복원적 설계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전실 내 팔부신장 2구 위치의 재고라는 당시 석굴암 수리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 석굴암 수리는 전면에 전통건축형식의 굴침건축을 덧붙임으로 인해 외관이 수리 전과 크게 달라지며 복원적 수리의 경향을 보여주지만, 석굴암에 대한 복원적 수리 의지를 알린 순간은 보호 목적과는 관계없는 팔부신장 2구를 펼친 순간이었다. 그 조치의 시비를 떠나 조치 행위 자체는 결과적으로 한국 건축유산의 보존원칙을 최소 개입적인 ‘보수’에서부터 초기 원형으로 변경하는 ‘복원’으로 변화시키고, 이후 주도적인 보존원

칙으로 자리 잡게 한 상징적인 시점이었다.

셋째, 보존원칙의 변화는 원칙 관련 용어의 의미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건축물이 창건된 시기, 또는 이른 특정 시기의 모습을 가리키는 뜻으로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원형(原形)’이라는 단어는 당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원상’이 지금까지의 모습 또는 가까운 시기에 발생한 이건이나 발굴, 훼손 등의 행위로 인해 변경되기 전의 모습을 가리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석굴암 수리를 거치면서 공사의 목표로 삼을 ‘어떤 모습’을 도출해가는 과정 중에 ‘원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원상’과 분리하였고 이후 ‘원형’ 용어의 사용이 점차 많아지는 것이 관찰된다.

넷째, ‘복원’ 용어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는 파손 혹은 수리행위로 해체된 부재의 재조립, 또는 멸실된 것의 복구나 재건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석굴암 수리를 거쳐 1960년대 후반에는 초기 모습으로 변경이라는 의미가 점차 확대되었다. 멸실된 것의 재건 의미는 여전히 혼용되었지만, 공정으로서의 복원은 ‘조립’이라는 명확한 용어로 대체되면서 거의 사라졌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 1961년 남대문수리공사와 석굴암수리공사에서 보이는 보존원칙의 수립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퇴락과 손상에 대한 ‘보수’에서 초기 모습으로 ‘복원’하는 변화는 대상의 회복하고자 하는 현존하지 않는 ‘초기 모습’에 대한 개념 수립과 용어 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대상의 초기 모습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전제로 해야 한다. 석굴암의 수리과정 중 고고발굴 등을 통해 현 상태와 다른 초기의 모습에 대한 연구가 전개되었고, 이를 명확히 가리키는 단어가 필요하게 되면서 ‘원형’이 그러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즉 이러한 ‘원형’ 용어의 등장은 해방 후 진행된 한국건축의 역사적 연구에 대한 당시 나름의 학술적 고취를 반영한다.

한편, ‘초기의 모습’에 대한 개념 수립과 명칭이 명확해진 이후에, ‘복원’이 그 초기 모습으로의 변경이라는 뜻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써 ‘원형’과 ‘복원’은 각기 보존의 ‘대상’과 ‘방법’으로서 동시에 의미 부여되고 이후 사용이 점차 증가하였다.

1960년대에 시대적, 학술적 한계 속에서 등장한 원형과 복원의 용어 및 그 의미 형성의 과정은 오늘날 이 용어를 유사한 의미로 계속 사용하고 주요 원칙으로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지 되돌아보도록 한다. 원형과

복원의 등장에는 학술성과의 누적이라는 배경뿐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개입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서 그 이전 모습의 지향이라는 신생국에서 보이는 현대적 국수주의와 같은 배경도 있다. 해방 후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주체적 문화유산의 보존이 시작됨을 밝히기 위해 이 두 용어가 선언적으로 사용된 혐의를 지울 수 없다.

한국 문화유산 보존원칙에 대한 오랜 관심과 수립 의지를 모아 최근에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이 마련되었다. 이 원칙에는 원상과 원형 및 복원에 대한 학계와 전문가 및 관련자들의 현시대적 이해와 지향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보존원칙 재정립의 시기에 해방 후 원상, 원형, 복원 등의 용어가 어떻게 등장하고 변화되었는지를 되짚어보는 것을 통해 수립된 원칙과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서울남대문수리보고서』, 1966
2. 문화재관리국, 『석굴암수리공사보고서』, 1967
3. 국립박물관, 『무위사극락전 수리공사 보고서』, 1958
4. 이수정, 「문화유산 보존원칙 수립을 위한 가치의 정의 및 방법론」, 『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vol.44
5. 이수정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진정성 개념의 속성과 변화 고찰」, 『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vol.45
6. 이수정, 「한국의 문화재 보존 관리에 있어 원형개념의 유입과 원형유지원칙의 성립 및 발달과정」, 『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vol. 49
7. 이수정, 「문화재 보존철학과 보존윤리의 필요성과 과제」, 『보존과학회지』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8, vol.34
8. 강현, 「한국의 건축문화재 보존원칙 재고 - 목조건축 수리공사 관련 국제적 원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17
9. 강현, 「건축문화재의 원형(原形) 개념과 보존의 관계- 한국 목조건축문화재 수리 역사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vol. 49
10. 정승진, 「동아시아의 건축보전에서 “원형의 진정성” 개념에 재고의 필요성」, 『아시아연구』, 한국아시아학회, 2004-06 7(1)
11. 윤무병, 「남대문 해체부재에 대한 조사 보고 개요」, 『미술자료』, 국립박물관, 1961
12. 김정기, 「남대문통신」, 『고고미술』, 1962
13. 신영훈, 「쌍봉사 통신」, 『고고미술』, 1963
14. 최용완, 「남대문 해체후 발견된 묵서」, 『미술자료』, 국립박물관, 1963, vol.4

15. 최용완, 「서울 남대문공사를 참관하고」, 『건축』, 대한건축학회, 1963, vol.7
16. 안병욱, 「남대문 중수공사를 마치고」, 『신세계』, 1963 (7)
17. 신영훈, 「서울 남대문 지붕의 변천」, 『고고미술』, 1965, vol.6
18. 나주시, 『나주향교 대성전 수리보고서』, 2008
19. 문화재위원회 회의록(1952년 12월19일부터 1959년 10월 21일까지)』. 문화재관리국, 1992
2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부록-문화재위원회회의록, 1965
21.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부록-문화재위원회회의록, 1966
22.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부록-문화재위원회회의록, 1967
23.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부록-문화재위원회회의록, 1971
24.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부록-문화재위원회회의록, 1972
25. 1963.1.29.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국가기록원
26. 1963.8.14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제11차회의. 국가기록원
27. 1963.10.12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제16차회의. 국가기록원

접수(2022.09.28.)

수정(2023.02.19.)

게재확정(2023.02.28.)